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본계획 수립 시 노사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 등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43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본계획 수립 시 노사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 등 (안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3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0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세무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수립 시 노사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 등

(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한 노사 의견 청취 및 반영을 의무화하고,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 <u>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고용정책 기본법」</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의2(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

현행	개정안
	성·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노동전환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제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¹⁾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현행법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수요조사·컨설팅 등 세부적인 지원내용,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

그런데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고용안정 문제는 정책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는 당사자인 노동계 또는 경영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같이 산업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공식적으로 청취·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아울러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노사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와 관련하여, 안 제7조제3항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조는 고용안정 지원³⁾이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 간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주체는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⁴⁾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사회적 대화의 원칙을 구체적인 절차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법의 기본원칙과도 정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의견 청취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판단 주체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⁵⁾ 문언상 해당 판단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용안정 지원”이란 산업전환 및 노동전환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⁶⁾ 동 조항을 통해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
체화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청회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
최를 의무화하고, 그 개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청회 개최 관련 입법례

국토기본법

제11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
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
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
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

6)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안 제13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⁷⁾는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위원회 체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⁸⁾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⁹⁾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¹⁰⁾를 설치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추진체계를 활용할 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노사 의견의 청취 및 반영에 관한 사항과

-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의 제정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 수립·집행 시 노사 참여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①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로 기능하게 되는 만큼, 의견수렴 체계의 일원화 측면에서 별도의 공청회 절차에 관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②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도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③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분과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고, ④「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⑤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임한 대통령령의 제정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참여 대상을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고용·노동 전문가의 참여 및 조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5